

# 경성카르텔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에 관한 OECD이사회 권고에 관하여

- 본 협회 조사부 -

OECD이사회는 지난 '98년 3월 25일 「경성카르텔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에 관한 OECD이사회 권고」를 채택하였다. 이 권고는 「법률의 수렴 및 유효화」 및 「국제협력 및 예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의 수렴 및 유효화를 위해서는 가맹국의 경쟁법에 경성카르텔을 효과적으로 제지하기 위한 제재와 집행이 반영되고 경성카르텔의 정의를 분명히 규정하고 그 적용제의 사항을 열거하며 투명성을 강조하고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여 수정하도록 하였으며 OECD는 권고채택 후 매년 제의 또는 신설승인 및 확장할 경우 이를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국제협력 및 예양에서는 가맹국은 이 규정에 따라 상호협력하여야 하며 경성카르텔에 대처하는 협력기구의 창설을 다국간의 협정 등에 고려하도록 하였다. OECD이사회 권고의 채택 경위를 살펴보면 '96년 10월에 개최된 OECD경쟁정책위원회 국제협력담당 작업부 회의에서 미국은 「카르텔문제 - 보다 효율적인 접근에 관한 합의에 즈음하여」의 제목으로 카르텔에 관한 협정(Agreement)의 체결을 제안하고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국제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각국간 차이점이 적고 경쟁정책상 폐해가 큰 경성카르텔 방지에 상호협력코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미국은 OECD가맹국이 ① 카르텔의 금지원칙을 채택하고, ② 카르텔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운영하며, ③ 카르텔에 대한 법집행에 있어 가맹국간 협력하는 세가지에 관하여 규정한 협정의 체결을 목표로 이를 OECD에서 작업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후 2월회의와 10월회의에서의 미국제안을 기본으로 OECD사무국이 작성한 권고안이 제출되고 여기에서 경성카르텔의 정의·비밀정보의 제공협력 및 적극적 예양의 실천방법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97년 6월회의, '97년 10월회의, '98년 2월회의에서 논의가 계속되어 오다가 경제정책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마무리하여 '98년 3월 25일 OECD이사회에서 이 권고가 채택되었다.

또한 '98년 4월 27일에 개최된 OECD 각료이사회는 코뮈니케를 통하여 모든 각료는 지난 3월에 합의한 OECD 권고를 환영하였다. 각료이사회는 가맹국에 대하여 이러한 경성카르텔은 세계의 소비자와 기업에 유해한 영향을 주므로 이를 제지하고 억제력을 위한 노력을 할 때에 상호협조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각료이사회는 비가맹국에 대하여도 이 권고에 찬성해 줄 것을 회구하였다.

경성카르텔 억제에 관한 이사회 권고내용을 보면 1960년 12월 14일의 OECD조약(제5조b항)을 감안하여 ① 경쟁법의 적용은 활력있는 시장의 확보와 책임장벽을 제거하고 세계무역을 촉진하며 반경쟁적 행위는 경제성장, 무역확대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제거한다. ② 가맹국이 경쟁법의 적용제외를 필요이상 확대하지 않고 공공이익 실현의 증거가 제시되는 경우에만 경쟁법의 적용제외를 인정한다. ③ 국제무역을 저해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가맹국의 법 또는 이익이 허용하는 경우 가맹국은 공통의 관심사건 조사에 상호조정, 협력하며 또한 자국이 보유한 정보의 공유 및 제3자로부터의 정보의 취득·공유에 관하여 가맹국의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협력한다. ④ 다자간 및 2국간 조약과 협정에 기초하여 비밀심사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가맹국에 상호이익이 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맹국 전체가 비밀심사정보를 공유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⑤ 비밀정보의 공유에 대한 협력은 공유정보의 사용에 충분한 보호가 전제되고 경쟁법의 적용범위 및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성질이 각국간에 상이한 점과 잠재적인 곤란성에 대하여 법적 해결이 필요하다. ⑥ 경성카르텔은 경쟁법상 최고의 악질적인 범위반이며 가격의 인상이나 공급의 제한에 의하여 카르텔이 실시되는 많은 국가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이로 인하여 당해 상품과 용역이 구입자에 따라서는 전혀 입수하기가 불가능하게 되며

또한 타구입자는 불필요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게 되는 점을 고려한다. ⑦ 경성카르텔에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는 경성카르텔이 세계무역에 주는 왜곡이 시장이 경쟁적인 국가에서 시장지배력, 낭비, 비효율을 가져다 주므로 국제적 관점에서 특히 중요하며 또한 경성카르텔이 일반적으로 비밀리에 행해지며 관련정보가 여러 나라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특히 협력에 의존함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권고는 가맹국 정부에 대하여 「경성카르텔을 금지하는 법률의 수렴 및 유효화」와 「경성카르텔을 금지하는 법률을 집행함에 있어서 국제협력 및 예양」의 두가지 측면에서 권고하고 있다. 첫째, 경성카르텔을 금지하는 법률의 수렴 및 유효화를 위해서는 경성카르텔을 효과적으로 제지하는 경쟁법이 각 가맹국에 법률로 확보되어야 한다. 이 법률에서는 ① 카르텔에 참여한 기업과 개인에게 충분한 수준과 종류의 효과적인 제재가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며, ② 문서 및 정보를 요구하고 위반에 대한 벌과금(Penalty)을 과하며 경성카르텔의 탐지와 시정(Remedy)을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집행기관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를 권고함에 있어서 ① 경성카르텔의 정의는 「경쟁자에 의하여 반경쟁적인 협정, 반경쟁적인 공동행위, 또는 반경쟁적인 약속에 의한 가격의 고정, 입찰담합, 생산제한 혹은 생산할당, 및 고객·공급자·지역 혹은 거래분야(Line of commerce)의 할당에 의하여 시장을 공유하고 분할」하는 내용으로 분명히 하고, ② 경성카르텔의 적용제의 범위도 ㉠ 비용(cost)절감 또는 생산량 증대라는 효율성의 합법적인 실현, ㉡ 가맹국 자신이 경쟁법의 적용범위에서 직·간접으로 제외된 것, ㉢ 이들 법률에 의하여 승인된 협정·공동행위 또는 조정된 것은 제외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외(Exclusions) 또는 승인(Authorization)된 경성카르텔 협정은 반드시 투명하여야 하며 또한 그 필요성과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필요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평가하고 정기적으로 수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권고가 채택된 후 가맹국은 OECD에 매년 제외 또는 승인의 신설·확정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경성카르텔을 금지하는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 국제협력 및 예양은

① 가맹국은 경성카르텔을 방지하고 공통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각국은 법률 집행시에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이에 더하여 가맹국간에 악영향을 끼치는 반경쟁적 행위를 합리적으로 배제하고 가맹국에 적용되는 적극적 예양의 원칙으로 협력이 개선될 수 있는 특성의 방법을 연구하며 자국의 법률집행 활동이 타국가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줄 때에는 예양의 원칙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성카르텔의 예방을 위한 가맹국간 협력으로 ㉣ 경성카르텔을 방지하는 공통의 이익은 피요청국의 법률, 규칙 및 중요한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가맹국간의 협력을 정당화하며, ㉤ 각국의 법률, 규칙 및 중요한 이익에 부합하고 상업상 기타의 비밀정보를 보호하고자 규칙을 지키면서 경성카르텔을 방지하는 가맹국간의 공통의 이익을 위하여 타국이 당국 소유의 문서와 정보를 공유하며 필요시에 강제적 수단을 사용하여 문서 및 정보를 수집하는 등 가맹국간의 협력을 정당화 하는 데 있다. ㉥ 가맹국은 타국의 요청에 협조하는 것이 자국의 법률 혹은 규칙에 위반되고 또는 자국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거나 또는 경쟁당국의 자원상의 제약을 이유로하여 지원요청을 거부하거나 협력을 제한하고 조건을 첨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 가맹국은 협력에 관한 문제, 즉 협력조직의 창설, 협정을 통한 조직에의 참가 등에 대한 협의에 동의하여야 한다. ③ 가맹국은 경성카르텔에 대한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 각국간의 효과적인 협력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하고 각국의 중요한 이익과 일치하도록 당해 장벽을 제거하는 제반조치가 반영되도록 국내법, 2국간 혹은 다국간 협정 등의 검토를 장려하고 있다. ④ 이 권고에 의하여 기도된 협력은 종전의 이사회 권고와 당사국간의 협정과 동일한 협력으로 간주한다.

OECD이사회 권고에서 경쟁정책위원회는 ① OECD에 통지되는 제외 및 승인의 기록을 보관하고, ② 관계가맹국의 요청에 응하여 권고의 적용에 관한 협의의 장소를 제공하며, ③ 권고의 실시에 관한 가맹국의 경험을 정리(Review)하고 경성카르텔을 금지하는 경쟁법 집행에서 협력과 개선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2년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있고, 비가맹국에 대하여도 이 권고에 찬성하고 이를 실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

#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심결사례

1998. 4. 13.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4개 의료용구 및 의약품 판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9712부사1835) (태전메디칼, 대한메디칼, 경성메디칼, 동방메디칼)	「태전메디칼」은 경상남도 김해보건소가 발주한 「전자동 혈액세포분석기 구매입찰」 및 「진단용 검사시약 및 재료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1996년 2월과 1996년 11월에 각각 「대한메디칼」등 부산광역시 소재의 의료용구 및 의약품을 수입·판매상에게 자신이 본건 입찰에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대한메디칼」등 의료용구판매상은 동 의료용구 및 의약품 구매입찰에서 「태전메디칼」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태전메디칼」의 입찰예정금액인 38,300천원 및 22,200천원보다 고액으로 응찰하는 등 의료용구 구매와 관련한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서 경쟁사업자와의 합의를 통해 자신 또는 경쟁사업자를 수주예정업체로 결정하고 동 합의내용의 이행을 위해 입찰에 앞서 응찰금액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용구 구매입찰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1호 위반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부산광역시 지역에서 발행되는 1개 지방일간지(전판)에 3단×10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포토록 함 ◎ 과징금 납부 명령 · 태전메디칼:1,815천원
(사) 한국휴게산업중앙회 천안시지부의 경쟁제한행위 (9801전사0073)	(사) 한국휴게산업중앙회 천안시지부는 커피등 차 원료와 부대물품 등의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1997년말부터 구성사업자들이 차값 인상을 요청하자 구 천안시 지역의 구성사업자 270명 중 커피전문점 등을 제외한 200여개소의 휴게음식점자들을 대상으로 1997. 12. 26. 자신의 사무실에서 차값을 제품별로 인상 또는 유지하기로 결정한 후 이를 자신의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하여 공동으로 준수토록 하였으며, 차값 인상에 대한 천안시로부터의 행정지도에 따라 1998. 1. 19. 자신의 구성사업자에게 문서를 발송하여 차값을 종전대로 환원하거나 일정범위 내로 인상 조정할 것을 선도하는 등 자신의 구성사업자들이 판매하는 차값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한 후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휴게음식점분야에서의 사업자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1호 위반	◎ 경쟁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에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

1998. 4. 22.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주)청호주택의 부당한 광고행위	(주)청호주택은 1994년 6월부터 1994년 11월의 기간 중 충청남도 천안시 직산면 삼은리 소재 「청호6차아파트」	◎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

## 심결사례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9802광고0094)	에 대한 주택분양광고를 함에 있어서 동 아파트 건축을 위한 설계 및 입지조성단계에서부터 동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할 때까지 1세대당 1대 이상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 면적을 확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대시설인 주차장에 관하여 “여유있게 주차가 가능한 충분한 주차시설”이라는 제목하에 “입주자의 편의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청호아파트는 1세대당 1대 이상의 넓은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거선택시 반드시 따져보게 되는 주차문제를 명쾌히 해결하였습니다”라고 표기된 팸플렛 5천부와 전단 20만장을 작성·배포하여 1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장 면적을 확보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6호 위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동 아파트단지 내 계시관 등 아파트 입주민들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전지크기(78.8×109cm)의 공표문으로 7일간 게시하여 공표토록 함

1998. 4. 24.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주)아이디피코리아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9801광고0061)	(주)아이디피코리아(IDP KOREA)는 1996. 11. 5. 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조선일보 등에 표시·광고를 함에 있어서 자신은 호주교육기관에 대한 해외홍보와 해외유학생 유치를 목적으로 1969년 호주에서 설립된 비영리단체인 IDP(International Development Program of Australian Universities and Colleges)의 한국내 연락사무소로 출발하여 1996년에 주식회사로 조직형태를 개편하고 호주유학 및 유학대행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호주정부의 정식 교육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문이나 팸플렛, 사무실 주변의 간판 등을 통하여 스스로를 ‘주한호주교육위원회’ 또는 ‘호주교육위원회’라고 표시·광고하는 등 소비자가 호주의 교육행정기관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6호 위반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본건과 관련하여 이미 광고한 횟수가 많은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1998. 5. 9.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한국전력공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 (9803독관0329)	한국전력공사는 자신의 계열회사인 YTN의 광고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대규모 발주자 및 수요독점자로서의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1996년도 자신과의 계약금액이 큰 67개 납품업체들을 납품업체 등에 대하여 업체별로 계약금액에 연동해 연간	㉠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및 계열회사에 대한 차별적 취급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

## 심경사건

사건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처
	<p>YTN 광고목표액을 약 160억원으로 책정한 후 동 납품 업체 등에 대해 YTN에 목표액에 상응한 액수의 광고를 게재하도록 적극 요청하는 등 거래강제행위를 하였으며, 자신의 전송망을 사용하고 있는 케이블TV의 11개 프로그램 공급업자 중 계열회사인 YTN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사업자에 대하여 전송망사용료 연체시에는 연체가산금을 부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열회사인 YTN에 대하여는 정당한 이유 없이 1995년 5월부터 현재까지 약 14억원에 해당하는 전송망 사용료 미납금에 대한 연체가산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23조제1항제1호 후단 위반</p>	<p>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3개 중앙일간지(전판)에 사회면과 경제면 중에서 택일하여 5단×18.5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대교개발(주)의 부당한 거래강제행위 (9802유거0219)</p>	<p>대교개발(주)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에 소재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1994. 1. 28. 이후 결혼예식장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1997. 12. 1. 까지 예식장 이용고객으로 하여금 일체의 식음료 반입을 금지하는 약관을 사용했으며, 예식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예식실은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자신의 예식장 구내식당을 이용하도록 하는 계약을 고객과 체결하고 이행하는 등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식당 등을 이용할 것을 강제하는 부당한 거래강제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호 후단 위반</p>	<p>◎ 거래강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p>
<p>(주)신세계백화점의 사업 활동방해행위 및 부당한 광고행위 (9712유거1644)</p>	<p>(주)신세계백화점은 자신의 운영하는 할인점인 「E-마트」 부평점이 입점하고 있는 (주)주영커먼의 복합상가 건물에 지상 1층 내지 4층 매장에 1997. 9. 6. (주)주영커먼이 기존의 백화점을 「씨에떼(SIETE)」라는 상호의 할인점으로 재개점하자 전국매장에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동원산업(주), 삼양식품(주), (주)오투기, 삼성출판사 등 주영커먼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에 대하여 주영커먼에 납품할 경우 자신의 전국매장에서 해당사의 제품을 철수시키겠다는 압력을 가하는 등 부당한 방법을 통해 경쟁사업자인 주영커먼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1997. 9. 11. 과 1997. 10. 4.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 중 판매가격이 경쟁사업자인 주영커먼에 비해 저렴한 상품만을 선정하여 비교표시한 전단지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자신의 모든 상품이 경쟁사업자에 비해 저렴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5호 후단 및 제23조제1항제6호 위반</p>	<p>◎ 사업활동방해행위 및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자신의 사업장에 전지크기(78.8cm×109cm)의 공표문으로 7일간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 심경사면

사건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처
(주)주영커먼의 사업활동 방해행위 (9802유거0201)	(주)주영커먼은 자신의 매출이 부진하자 1996. 10월경 자신과 한 건물에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신세계백화점의 할인점인 「E-마트」 부평점에 일방적으로 부평점 매장에서 판매중인 상품 중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과 중복되는 일부상품의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주)신세계백화점측이 이를 거절하자 1997. 9. 6. 자신이 백화점으로 운영하던 동 건물의 지상 1층 내지 4층을 「씨에떼(SIETE)」라는 상호의 할인점으로 재개점하고 1997. 9. 5.부터 「E-마트」 부평점의 직원과 고객이 이용하는 지하1층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트 등의 운영을 정지하거나 지상 및 지하주차장의 진입과 사용을 제한하고 남문출입문을 봉쇄하는 등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5호 위반	◎ 사업활동방해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자신의 사업장에 7일간 게시하여 공표토록 함

1998. 5. 19. 심결

사건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처
13개 항공사의 부당한 공동행위(9802공동0121) ((주)대한항공, (주)아시아항공, 타이항공(주)한국지사, 캐세이패시픽항공 한국지사, 싱가포르에어라인리미티드 한국지점, 말레이시아항공(주) 한국지점, 세홍항운(주), 국제항공운송(주), 불란서국영항공한국, 영국항공(주) 한국지점, (주)케이엘엠네덜란드 항공사 한국영업소, 스위스에어트랜스컴퍼니리미티드 한국지점, (주)협성항공)	(주)대한항공 등 한국발 유럽노선 및 동남아노선에 취항하는 13개 항공사는 지난 1997. 12. 15.과 1998. 1. 8. 각각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에 소재한 (주)대한항공 서울국제여객지점 건물 회의실에서 회동하여 노선별·항공사별 적용운임의 수준과 단체운임의 적용원칙 등을 논의하고 노선별·항공사별 항공운임을 논의의 전보다 높게 책정하는 등 한국발 유럽노선 및 동남아노선의 여객으로부터 받는 항공운임 등의 운임관련사항을 공동으로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 한국발 유럽노선 및 동남아노선의 국제항공여객운송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1호 위반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연명으로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5단×18.5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 과징금 납부 · (주)대한항공 : 200,000천원, · (주)아시아나항공 : 50,000천원, · 타이항공(주) 한국지사, 캐세이패시픽항공 한국지사, 싱가포르에어라인리미티드 한국지점 : 각 20,000천원 · 불란서국영항공한국, 영국항공(주) 한국지점, (주)케이엘엠네덜란드항공사 한국영업소 : 각 15,000천원 · 말레이시아항공(주) 한국지점, 세홍항운(주), 스위스에어트랜스컴퍼니리미티드 한국지점, (주)협성항공 : 각 10,000천원

## 심결사항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종이컵원지 제조 4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9802단체0208) ( (주)대한필프, 한창제지공업(주), 한솔제지(주) 신풍제지공업(주) )</p>	<p>대한필프 등 종이컵원지 제조 4개사는 각 회사별로 종이컵원지의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판촉전략·가격정책 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1톤당 76만원 내지 95만원하던 종이컵원지의 판매가격을 1997. 9. 1. 이후 세차례에 걸쳐 동일한 날짜 또는 비슷한 시기에 각각 동일하게 105만원 내지 145만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 종이컵원지 공급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1호 위반</p>	<p>◎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연명으로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5단×18.5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 과징금 납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대한필프: 278,300천원,</li> <li>· 한창제지공업(주): 143,800천원,</li> <li>· 한솔제지(주): 85,800천원</li> <li>· 신풍제지: 27,700천원</li> </ul>
<p>L.P.G용기용밸브 제조 3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9802단체0115) (우일금속(주), 영도산업(주), (주)화성)</p>	<p>우일금속(주) 등 L.P.G용기용밸브 제조 3개사는 1997. 5. 1. 종전에 1개당 1,900원 내지 2,000원하던 L.P.G용기용밸브의 판매가격을 동일하게 2,400원으로 인상하고, 이어 1998. 1. 1. 및 1998. 1. 20.경에도 1개당 2,900원 및 3,40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등 세차례에 걸쳐 공동으로 L.P.G용기용밸브의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L.P.G용기용밸브 공급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1호 위반</p>	<p>◎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4단×15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 과징금 납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일금속(주): 55,600천원</li> <li>· 영도산업(주): 21,500천원</li> <li>· (주)화성: 18,700천원</li> </ul>
<p>오비맥주(주)의 부당한 광고행위 (9802광사0105)</p>	<p>오비맥주(주)는 1997. 12. 31.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맥주인 『OB라거』제품에 대한 광고전단지 15,000매를 제작하여 전남지역 주류도매상 및 소매상 등에 배포하여 광고함에 있어서 자신은 1997년에 농협중앙회가 전남지역 농가에 계약재배를 의뢰하여 수매한 맥주보리의 24%에 해당하는 맥주보리만을 구입·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남지방에서 계약재배된 맥주보리는 100% 수매하여 『OB라거』의 주원료로 사용합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인 『OB라거』맥주의 내용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6호 위반</p>	<p>◎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광주·전남지방에서 발행되는 4개 지방일간지(전판)에 5단×18.5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사)한국휴게실업중앙회 공주시지부의 경쟁제한행위 (9802전사0212)</p>	<p>(사)한국휴게실업중앙회 공주시지부는 환율인상으로 수입비중이 높은 커피와 국산 차(茶)의 원료 및 부대물품 등의 가격 등이 인상되어 자신의 구성사업자들로 부터 차값 인상을 요구받자 일방적으로 커피 등 23종의 경우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 쌍화차 등 9종</p>	<p>◎ 경쟁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충청남도 지역에서 발</p>

## 심경사례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은 3,000원에서 3,500원으로 500원씩 각각 인상할 것을 결정하고 이러한 사실이 기재된 요금표를 작성하여 1998. 1. 7.부터 1. 30.까지의 기간동안 구성사업자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월회비를 받는 과정에서 배부하고, 동 요금표에 기재된 가격대로 차값을 인상하여 받도록 하였으며, 이후 공주시로부터 차값 인상과 관련하여 행정지도를 받고 1998. 2. 13. 자신의 사무실에서 운영위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를 열어 차값 인하를 논의하여 2. 16.부터 1,500원으로 인상된 차값에 대하여는 1,300원으로 200원 인하하되 3,500원으로 인상된 차값은 인상된 가격대로 받기로 의결한 후 구성사업자에게 변경된 요금표를 작성하여 배부하거나 전화로 통지하여 이를 준수토록 하는 등 자신의 구성사업자들의 차값을 유지·결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1호 위반</p>	<p>행하는 1개 지방일간지(전판)에 3단×10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주)세림이동통신의 구속 조건부거래행위 및 거래상지위남용행위 (9801구사0030)</p>	<p>(주)세림이동통신은 무선호출용역 위탁대리점들은 별도의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영업능력이나 경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스스로 거래상대방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전승인 없이는 다른 통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조항을 설정하고 1993년 10월부터 자신과 무선호출영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대리점인 '한국무선통신'이 1997년 6월 한솔PCS(주)와 개인휴대통신(PCS) 위탁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한솔PCS(주)와도 거래를 개시하려고 하자 동 위탁대리점에 대하여 '97. 7. 22.부터 11. 4.까지의 기간동안 4회에 걸쳐 한솔PCS와의 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동 위탁대리점이 이에 불응하자 '97년 10월 동 위탁대리점과 연결된 전산망을 단절하고 단말기를 철거하였으며, 약 5천만원에 달하는 관리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동 위탁대리점에 대하여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5호 전단 및 제23조제1항제4호 위반</p>	<p>㉔ 구속조건부거래행위 및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경상북도 지역에서 발행하는 1개 지방일간지(전판)에 3단×10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한국부동산신탁(주)의 상가분양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9802약이0205)</p>	<p>한국부동산신탁(주)는 자신이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는 상가분양계약서에 일반적으로 당초 예정했던 급부내용과 실제의 급부내용이 상이한 경우에 정산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 사전에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치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동 분양계약서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건축물 시공상 또는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인하</p>	<p>㉔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토록 함</p>



## 심결사례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여 건물 분양면적의 2%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에 정산하기로 하고, 2% 미만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법률상 등기의 유무는 재산권 행사와 관계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엄격히 준수되어야 할 것이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등기절차 등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분양계약서 제4조제1항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전절차 지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등 자신의 상가분양계약서에 고객의 항변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였으며, 이밖에도 시설변경 및 용도변경 등과 같은 일방적인 급부내용의 변경조항, 부당한 화재보험사 지정조항, 계약해제권의 행사요건의 완화조항이나 과중한 손해배상의무 부담조항과 같이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부당하게 배제하거나 고객의 의무를 과중시키는 부당한 약관조항을 사용함으로써 약관규제법 제6조제2항제1호, 제7조제3호, 제8조, 제9조제2호, 제10조제1호, 제11조제1호 및 제11조제3호 위반</p>	<p>㉠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토록 함</p>
<p>부산상조(주) 및 (주)새부산상조의 상호회원 가입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 (9802약이01110, 9803약이0263)</p>	<p>부산상조(주) 및 (주)새부산상조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불입받은 후 이에 대한 대가로 회원의 결혼 또는 장의행사시 약정된 역무나 물품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인 상호회원 가입계약 체결시 자신이 사용한 상호회원 가입약관의 해약환급금 조항에 대해 고객의 청구시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하여 제공하며, 영업사원에게 지급되는 회원 모집수당은 회원모집형태의 영업에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지출로서 본질적으로 근로대가에 불과하므로 동 계약이 여타의 상품판매계약이나 용역제공계약에 비해 관리비나 운영비 등에 과다한 지출을 요하거나 통상적인 계약체결에 비해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드는 비용이 특별히 과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입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위약금 성격의 공제금액이 누적되어 일반적인 거래관행상의 위약금인 총 거래금액의 10%를 상회하는 계약금액의 최고 34.5%~35.5%까지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는 등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을 사용함으로써 약관규제법 제8조 및 제17조 위반</p>	<p>㉠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토록 함</p>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동서식품(주)와 한국네슬레(주)의 부당한 공동행위 (9803독관0277)</p>	<p>동서식품(주)와 한국네슬레(주)는 인스턴트 커피나 커피믹스 등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커피제품의 제조경비나 임금수준 등 원가구성 내역에 서로 차이가 있고, 제품가격 인상의 주요 원인이었던 원두가격 및 환율이 서로 차등 적용되었음도 불구하고 가격인상 전에 팩스 등을 통하여 자신의 가격인상예정내용을 상호 통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맥심’이나 ‘테이스터스 초이스’ 등 인스턴트커피 제품의 경우에는 지난 1997. 7. 1.부터, 커피믹스 제품의 경우에는 같은 해 1997. 10. 7.부터, 원두커피 제품의 경우 같은 해 7. 1.부터 각각 가격을 동일하게 인상하는 등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커피제품의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여 국내 커피공급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1호 위반</p>	<p>◎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4단×15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 과징금 납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서식품(주) : 1,721백만원</li> <li>· 한국네슬레(주) : 1,247백만원</li> </ul>
<p>동부한농화학(주)의 거래거절행위 (9802경축0204)</p>	<p>동부한농화학(주)는 지난 1997. 4. 15.에 1997. 6. 1.부터 1998. 12. 31.까지 재현상호(주)와 석고보드 및 밤라이트 등을 공급한다는 내용의 물품납입계약을 체결하고 당초 계약단가대로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재현상호(주)에게 석고보드 등을 공급하던 중 1997. 6월 국내 석고보드 제조3사간의 석고보드 등의 가격인상에 대한 합의가 성사되자 동 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재현상호(주)에게 물품공급을 중단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상전 가격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한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물품공급을 거절하는 등 부당한 거래거절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 전단 위반</p>	<p>◎ 거래거절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4단×15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SK주식회사의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 (9801유거0038)</p>	<p>SK주식회사는 사명을 “유공”에서 “SK”로 변경한 이후 고객에 대한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SK(구 유공) BC카드 회원들을 대상으로 신문광고 등을 통하여 지난 1997. 12. 1.부터 12. 20.까지 20일간의 기간 및 1997년 12월말까지의 기간동안 “유실적회원 특별사은행사 두 번만”과 “우수회원 특별사은행사 백번째”라는 명칭으로 소비자경품류 제공행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2회 이상 상품을 구입하여야만 응모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의한 소비자현상경품류 제공행위를 경품고시에서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석유류 제품을 2회 이상 주유한 고객이나 100회 이상 주유한 고객에 대해서만 응모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호 위반</p>	<p>◎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 심경사건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사)한국이용사회 경기도 협의회 시흥시지부의 경쟁제한행위 (9803공동0292)</p>	<p>(사)한국이용사회 경기도협의회 시흥시지부는 구성사업자 각자의 기술·서비스 및 경영전략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이용요금에 대해 1997년 6월 중순경에 시흥시에 소재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회장 1인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상무위원회를 열고 동 위원회에서 1997. 7. 1.부터 자신의 구성사업자 이용소의 이용요금을 종전 7,000원 내지 9,000원에서 8,000원 내지 10,000원으로 인상할 것을 결의한 후 인상된 이용요금표를 각 구성사업자에게 배부하였으며, 자신이 정한 협정요금보다 저렴한 이용요금을 받는 구성사업자에 대해서는 1차로 구두경고하고, 1차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협정요금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자율지도원을 동원하여 위생검사 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청에 통보하여 체재조치를 받도록 하는 등 경기도 시흥시지역의 이용소 이용요금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한 후 이를 자신의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 지역 이용소 거래분야에서의 사업자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6조제1항제1호 위반</p>	<p>◎ 경쟁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p>
<p>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등 제조 5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9802공동0217) (주)한국가스기기, (주)신우전자, (주)이우기기, (주)성화전자, (주)홍진</p>	<p>(주)한국가스기기 등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및 경보기 제조 5개사는 1997. 12. 23.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에서 모임을 갖고 1998. 1. 1.부터 단식경보기의 최저가격을 개당 15,000원으로 하고 기타 제품은 판매단가의 5% 범위 이내로 업체별로 차등 인상할 것 등을 합의하는 등 자신들이 제조하여 주거래업체인 설비업체 등에 판매하는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및 경보기 등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여 국내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및 경보기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1호 위반</p>	<p>◎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연명으로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1998. 5. 27.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사)충청남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경쟁제한행위 (9801전사0082)</p>	<p>(사)충청남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자동차운수사업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개인택시자격증(택시내 기사용)」 발급업무 등 국가위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자신의 구성사업자가 아닌 2명의 신규개인택시면허사업자가 1997. 12. 6.자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개인택시자격증</p>	<p>◎ 경쟁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2,852명)와 비구성사</p>

## 심경사례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택시내 게시용)」을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자 동 비구성사업자에 대하여 자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발급해주지 않는 등 비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1호 위반	업자(2명)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
모토로라반도체통신(주)의 부당한 광고행위 (9803광고0308)	모토로라반도체통신(주)는 '98. 3. 6.부터 3. 25.까지의 기간동안 일간스포츠 등 일간지에 자신의 수입·판매하는 디지털 휴대폰인 「DMT-8000」에 대하여 실제 구입에 따른 판매가격 및 조건을 명기하지 않은 채 단지 「지금 SK텔레콤 대리점에서 디지털로 바뀌드립니다.」, 「지금 사용하고 계신 전화번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사용하시던 휴대폰은 반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표현하여 광고하는 등 마치 “무료”로 기존에 사용하던 자사의 아날로그 휴대폰을 디지털 휴대폰으로 바꾸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6호 위반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4단×15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사)한국목욕업중앙회 공주시지부의 경쟁제한행위 (9803전사0265)	(사)한국목욕업중앙회 공주시지부는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각자의 경영능력, 자금사정, 원가 등을 고려하여 각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7년 말경 구성사업자들이 유류값 인상을 이유로 목욕요금 인상을 요구하자 구성사업자들의 목욕요금을 성인의 경우에는 2,500원에서 3,000원으로, 7세 이하의 소인의 경우에는 1,300원에서 1,800원으로 각각 500원씩 인상하여 1998. 1. 20.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후 공주시가 동 요금인상 결정을 문제삼자 1998. 3. 4. 간담회를 개최하고 목욕요금을 성인의 경우에는 2,800원으로, 소인의 경우에는 1,600원으로 각각 200원씩 인하하고 이를 1998. 3. 10.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는 등 자신의 구성사업자들의 목욕요금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주시지역 목욕업분야에 있어서의 가격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1호 위반	㉠ 경쟁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충청남도지역에서 발행되는 1개 지방일간지(전판)에 3단×10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롯데쇼핑(주)의 사업활동방해행위 (9709유거1239)</p>	<p>롯데쇼핑(주)는 자신의 납품업체인 (주)리리제과가 1996. 4. 30. 자신의 경쟁사업자인 금강산업개발(주)의 현대백화점 부산점에 최초로 과자류를 납품하자 리리제과로 하여금 현대백화점 부산점에 과자류를 납품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1996. 12월경에 「96NY」라는 브랜드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 입점 준비중인 (주)대하패션에 압력을 가하여 입점예정일 3일전인 12. 13.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자신의 매장에 납품하거나 입점해 있는 납품 및 입점업체들로 하여금 경쟁사업자의 매장에 납품 또는 입점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5호 후단 위반</p>	<p>㉠ 사업활동방해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2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하고 동 사실을 자신의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p>
<p>대한투자신탁(주)의 부당한 광고행위 (9803광고0259)</p>	<p>대한투자신탁(주)는 고객이 투신사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위해 고려하는 일반적인 지표가 고객들이 맡긴 신탁재산의 크기를 나타내는 수탁고로서 가장 정확하게 나타나야 할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인 한국투자신탁에 이어 자신의 수탁고가 국내 투자신탁회사 중에서 두 번째인데도 '98. 2. 16. 한국경제신문 등 5개 중앙일간지에 자신에 대하여 "대한민국 최대의 투자신탁, 수탁고 투신업계 1위"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여 마치 자신이 국내 최대의 투자신탁회사인 것처럼 광고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6호 위반</p>	<p>㉠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주)국가고시중앙회의 부당한 광고행위 (9802광고0195)</p>	<p>(주)국가고시중앙회는 1997. 9월부터 1998. 4월의 기간 중에 문화일보 등 5개 중앙일간지에 각종 자격증취득시험에 대한 총 50회의 광고를 함에 있어서 자신은 자격증 취득에 대한 수험교재를 제작·판매하는 주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호에 대해 주식회사 부분을 빼고 광고함으로써 자신이 마치 국가자격시험을 관장하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인 것처럼 표현하였으며, 『운전면허 기능검정원 및 강사』자격시험에 대한 광고에서는 "국가고시중앙회 부설 교통안전교육연수원"이라고 표현하는 등 단순히 교재납품 관계에 불과한 사업자를 마치 자신에게 부설된 전문교육기관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였으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물류전문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거나 전국 각 법원에서 컴퓨터속기사를 대거 선발하기로 설정함으로써 각각</p>	<p>㉠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3개 중앙일간지(전판)에 5단×37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많은 인원을 선발 중에 있어 자격증 취득이 용이하거나 자격증 취득시 취업이나 자영업이 잘 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6호 위반</p>	
<p>한국할부금융(주) 등 20개 할부금융사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한국할부금융(주), 장은할부금융(주), 서울할부금융(주), 동부주택할부금융(주), 성원주택할부금융(주), 동아주택할부금융(주), 신안주택할부금융(주), 금호주택할부금융(주), 대한주택할부금융(주), 한일할부금융(주), 우리주택할부금융(주), 국민할부금융(주), 롯데할부금융(주), 동서할부금융(주), 현대할부금융(주), 삼성할부금융(주), 한미아남할부금융(주), 산업할부금융(주), 코오롱할부금융(주), LG신용카드(주))</p>	<p>한국할부금융(주) 등 20개 할부금융사는 1996. 1월부터 할부금융 영업을 하던 중 1997년 11월 IMF의 긴급금융지원상황 이후 시중 실세금리의 폭등으로 조달금리가 대폭 상승하자 자신의 거래고객들과 당초 주택할부금융약정서에 일정기간 동안 대출이자율을 변경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시장의 변화 등의 이유를 들어 당초 12.7%~19.64%였던 대출이자율을 16.9%~28%까지 인상하는 등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위반</p>	<p>㉟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자신의 거래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함과 동시에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용어해설

## 핫머니 (Hot Money)

국제금융시장을 이동하는 투기성 단기자금을 가리킨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자본은 유입되는 형태와 투자기간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그 나라에 공장이나 건물을 짓고 장기간의 기업활동으로 경상이익을 얻고자 하는 자본으로 직접투자라 한다. 직접투자는 생산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고용을 확대하므로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또 다른 하나는, 주식·채권·외환 등의 금융자산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수익을 얻으려는 자본이다. 간접투자라 불리는 이러한 유형의 외국자본은 시세차익을 주목적으로 하므로 시장상황에 따라 투자기간이 일정하지 않고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도 경우에 따라 다르다. 간접투자 중에서 어떤 나라의 주가·금리·환율 등의 변동이 예상될 때 그것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짧은 기간 동안 투자되는 투기성 자본을 핫머니(Hot Money)라고 한다.

이러한 핫머니는 문제점이 많은 자본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한 나

라에서 주가가 상승하거나 그 나라 통화 가치가 올라갈 경우 주가차익이나 환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자금을 투자한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지역을 찾아 대규모 자금을 일시에 유출시켜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린다. 핫머니는 그 자체가 주가·금리·환율 등의 변동 폭을 더 크게 함으로써 경제를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자본의 유입은 한 나라의 경제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국제금융 전문가들은 '94년말 멕시코 페소화 위기를 비롯, '95년 2월 영국 배어링금융 파산사고, 최근의 동남아시아 위기 등 모든 금융대란에는 핫머니의 급격한 이동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헤지펀드(hedge fund)는 전형적인 핫머니로서 처음에는 분산투자를 통한 위험회피(hedge) 수단으로 만들어졌으나 지금은 수익이 생기는 곳이면 세계 어느 곳이든 주식·외환·채권을 가리지 않고 공격적 투매를 일삼는 위험한 투기자금이다.